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제6회 정기총회

일시

2020년 04월 15일 수요일 14:00-15:00

장소

온라인 회의

주최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

[목 차]

1. 제 6회 정기 총회 일정 -----	2
2. 연혁 -----	3
3. 제 5회 정기총회 회의록 -----	5
4. 2019년도 감사보고 -----	7
5. 2019년도 회무 보고 -----	8
6. 2019년도 사업 보고 및 2019년도 결산 보고 -----	9
7.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2020년도 예산(안) -----	13
8. 의안심의 -----	16
9. 부록 -----	28
1) 2019년 임원 명단 -----	28
2) 2019년 위원 명단 -----	28
3) 2019년 분야별 전문간호위원회 위원장 명단 -----	29
4)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정관 -----	30

1. 제 6회 정기 총회 일정

회원 점명 -----한지은 서기이사
전 회의록 낭독 ----- 한지은 서기이사
감사 보고 ----- 광미경/심강희 감사
2019년 사업시행 결과 보고
 회무 보고 ----- 강영아 총무이사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임초선 회장
 2019년도 결산 보고 ----- 정혜정 회계이사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 임초선 회장
기타 안건 심의 ----- 임초선 회장
폐회

2. 연혁

2015. 02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설미이 회장 외 10명)
2015. 08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창립총회 개최(회장선출: 설미이 전문간호사)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홈페이지(www.kaapn.or.kr) 개설
2015. 11 제1회 학술대회 ‘한국전문간호사의 현황과 발전방안’ 개최
2016. 04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창간호 발행.
2016. 06 제2회 정기총회와 제2회 학술대회 ‘전문간호사의 직무현황 및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미래전략’ 개최
전문간호사 정책연구를 위한 TFT 신설
2016. 09 제1회 전문간호사 연수강좌 ‘전문간호사를 위한 사례기반 임상추론 연수강좌’ 개최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2호 발행
2016. 11 제3회 학술대회 ‘Best Advanced Nursing Practice’ 개최
2016. 12 병원간호사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전문지원인력 역할 정립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3호 발행
2017. 02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정책자료집 ‘전문간호사의 활성화 방안’ 발간
2017. 03 제3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전문간호사제도의 성공적 정책을 위한 벤치마킹’ 개최,
설미이 한국전문간호사협회회장 연임
- 2017.07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4호 발행
- 2017.08 제2회 전문간호사 연수강좌 ‘전문간호사를 위한 사례기반 임상추론 연수강좌’ 개최
2017. 10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5호 발행
2017. 11 제4회 학술대회 ‘ Patient Centered Care by APN’ 개최
2017. 12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6호 발행
2018. 01 임원 워크숍 개최
- 2018.03 제4회 정기총회 및 전문간호사 정책세미나 ‘전문간호사 법제화’ 개최
병원간호사회 용역연구 ‘종합병원 전문지원인력 실태조사’ 완료
2018. 04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7호 발행
2018. 05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TFT 활동 개시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산하 정책연구소 발족
2018. 06 제3회 전문간호사 연수 강좌 ‘논문 작성을 위한 통계분석’ 개최
2018. 07 임시이사회 개최(설미이 회장 궐위로 차기 정기총회 일정 조정)
2018. 08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8호 발행
2018. 10 제5회 정기총회 및 제5회 학술대회 ‘전문간호사를 위한 사례기반임상추론- 심혈관 및

- 호흡기계 과정' 개최
제3대 임초선 회장 선출
2018. 11 2018년 정책심포지엄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I' 개최
2018. 12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관련 간담회(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참여) 진행
2019. 01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9호 발행
2019. 02 제6회 학술대회 '전문간호사,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도약' (한국중환자간호학회와 합동 개최)
임원 워크숍 개최
2019. 03 2019년 정책심포지엄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II' 개최
- 2019.04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10호 발행
2019. 06 제4회 전문간호사 연수강좌 '전문간호사를 위한 사례기반 임상추론; 소화기계, 뇌신경계 과정' 개최
2019. 07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성명서 발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 바란다!'
2019. 08 업무법제화 TFT를 '업무법제화 특별위원회'로 승격
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자문 활동
2019. 09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11호 발행
2019. 10 2019년 정책심포지엄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III' 개최
전문간호사 홍보 동영상 제작,
'전문가 합의로 도출된 한국전문간호사의 공통업무범위' 중환자간호학회지 논문 게재
2019. 11 대한간호협회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관련 회의 회장단 참석
2019. 12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12호 발행
정책연구소 '국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안)' 정책보고서 발간
병원간호사회 용역연구 '전문간호사 분야 체계화 연구' 완료
업무법제화 특별위원회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의료인의 경험: 전문의와 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근관절건강학회지 논문 게재

3. 제 5 회 정기총회 회의록

■ 일 시: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08:40- 09:20

■ 장 소: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 1층 강당

■ 참석회원: 57 명

■ 위임장 제출: 66 명

1. 설미이 회장의 궐위로 정기총회를 앞당겨서 진행함을 알리고, 박하영 부회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강영아 총무이사가 재적회원 216명, 위임장 제출 66명, 참석회원 57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다.
3. 박하영 부회장이 전 회의록을 서면 배포한 자료(총회자료집198-200페이지)로 대신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고 양화정 회원이 서면으로 받기를 동의하고 한지은 회원이 재청하여 참석회원 전원 동의로 통과하다.
4. 하희선/심강희 감사가 감사를 확인하였음을 박하영 부회장이 대신 보고하다(총회자료집 201페이지).
5. 강영아 총무이사가 2018년도 회무보고(9/30일까지)를 하다(총회자료집 202페이지).
6. 박하영 부회장이 2018년도 사업 보고를 하다(총회자료집 203-205페이지). 최수정 회원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김명희 회원이 재청하여 참석회원 전원 동의로 통과하다.
7. 정혜정 회계이사가 2018년도 결산 보고를 하다(총회자료집 206페이지). 김임령 회원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곽미경 회원이 재청하여 참석회원 전원 동의로 통과하다.
8. 2019년도 사업계획안을 박하영 부회장이 발표하다(총회자료집 209페이지). 김정혜 위원이 동의하고 양화정 회원이 재청하여 참석인원 57명 중 47명의 찬성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안이 통과되다.
9. 2019년도 예산안을 박하영 부회장이 발표하다(총회자료집 210-212페이지). 임초선 위원이 동의하고 이충은 회원이 재청하여 참석인원 중 53명의 찬성을 확인하여 예산안이 통과되다.

10. 김명희 선거위원장의 진행 하에 제 3기 임원을 선출하다. 정관에 따라 회장 궐위선거가 2018년 7월 10일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이에 2018년 8월 1일 회장 선거 미 입후보 등록 공고 하여 총회 개최 15일 전인 2018년 10월 5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으며 그 결과 후보 임초선 회장단(부회장 박하영, 부회장 최수정), 감사 후보 심감희, 감사후보 곽미경이 단독으로 등록하였음을 알렸다. 이에 정관에는 무기명 투표로 되어 있으나 단독후보이므로 찬반 거수로 투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참석 회원 모두 이에 찬성하였다.
11. 박하영 부회장이 총회에 상정할 기타 안건이 있는지 질의하다. 더 이상의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박하영 부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 2018.10.20 18:30

사회: 박하영 부회장

기록: 강영아

4. 2019년도 감사 보고

감사보고서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회 회무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각종 회의록, 회계장부 및 통장, 회계관련기록을 대조한 결과

착오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3일

감사: 곽 미 경 (인)

심 강 희 (인)

5. 2019년도 회무 보고

1.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 개최 (2018.10월 ~ 2019년 12월)

회의명	집회 수	비고
총회	1회	2018년 10월 20일
이사회	4회	정기이사회 4회 외 online 수시회의
정책위원회	2회	Off line 2회/ on line 수시회의
기획위원회	4회	Off line 4회/ on line 수시회의
교육위원회	3회	Off line 3회/ on line 수시회의
연구위원회	4회	Off line 4회 / on line 수시회의
학술위원회	2회	Off line 2회 / on line 수시회의
홍보위원회	2회	Off line 2회 / on line 수시회의
업무법제화 특별 위원회	10회	
계	32회	

2. 회원 현황 (2020년 4월 6일 기준)

구분	누적 회원 수	회원 증가 수 (명)
평생회원	175명	32명
일반회원	831명	381명
	1,006명	413명

3. 문서 수발 현황

구분	건수	문서번호
공문 발송	33건	2018-0051, 2019-0001 ~ 2019-0032
공문 수신	9건	

6. 2019년도 사업 보고 및 2019년도 결산 보고

1) 2019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위원회	2019년 사업계획	2019년 사업실적 보고
기획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간호사와 한전협에 대한 홍보 확대 2. 홈페이지 보안 검토 3. 후원업체 확대방안 수립 (홈페이지 배너 광고 후원 검토 등) 4. 정책 세미나 개최 5. 한국전문간호사 협회 임원 워크숍 6. 기획위원회 회의 년 4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전협 임원과 위원간 소통의 창(밴드)개설 및 운영 2. 전문간호사 대국민 홍보 영상 제작 3. 임원과 위원을 위한 워크숍 개최 (“함께 만들어요~한국전문간호사의 밝은 미래를~”, 2019년 2월 23일) 4. 정책 심포지엄(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II) 개최 (2019년 3월 30일) 5. 기획위원 회의 4회 개최 6. 한전협 홈페이지 협회 활동 및 보도기사 업데이트
교육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위원회 회의 4회 개최 2. 제 4회 전문간호사 연수강좌 개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위원회 회의 3 회 개최 2. 전문간호사 연수강좌 개최(2019.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간호사를 위한 사례기반 임상추론(소화기계 및 뇌신경계 과정) 참석자: 74명
연구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위원회 회의 4회 개최 2. 우수연구계획서상 2편(임상 논문, 학위논문) 시상 3. 병원간호사회 용역 연구 진행: ‘전문간호사 분야별 체계화 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위원회 회의 4회 개최 2. 우수연구계획서상 2편 (임상 논문, 학위논문) 시상: COVID-19 로 인해 지원기간 연장, 추후 재공고 예정 3. 병원간호사회 용역 연구 ‘전문간호사 분야별 체계화 연구’ 완료 https://khna.or.kr/home/pds/utilities.php
정책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위원회 회의 8회 개최 2. 업무 법제화 TFT 운영 3. 업무 법제화 관련 유관기관 및 보건복지부 교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위원회 회의 2회 2. 업무법제화 특별위원회 (전. 업무 법제화 TFT) 활동 3. 협회 법인화 추진 준비
학술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위원회 회의 5회 개최 2. 전문간호사 학술대회 개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위원회 회의 2회 개최 2. 한전협 정책 심포지움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III ◆ 일시: 2018년 11월 10일 ◆ 장소:성균관대학교 히포크라테스홀 (삼성생명 일원역빌딩 B동 9층)

위원회	2019년 사업계획	2019년 사업실적 보고
홍보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연 4회 발간 2. 총회/학술대회/정책심포지엄 후 기사 작성 3. 연수강좌 지원(사진촬영 등) 4. 전문간호대학원 대상 협회 홍보물 제작 5. 협회 홍보 브로셔 제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뉴스레터 4회 발간 2. 공식행사 홍보기사 배포 3. 연수강좌 지원(사진촬영 등) 4. 2019년 8월 2 차 전문간호사 시험 응원 및 협회 홍보 5. 협회 홍보 브로셔 제작 이월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특별위원회	<p>전문간호사 업무범위 TFT 에서 특별위원회로 승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회장단, 자문위원, 정책연구소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법제화 특별위원회 회의 10회 ◆ 보건복지부 간담회 2회 (의료자원정책과 간호정책TFT, 2018.12.12 / 2019.03.13) ◆ 국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안 한전협 정책보고서 발간 (2019.1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면담(2019.09.17) ◆ 대한간호협회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관련 회의 참석(3회) 및 의견 전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자문 활동을 위한 연구” 자문 활동 ◆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관련 연구 및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합의로 도출된 한국전문간호사의 공통업무범위 - 중환자간호학회지 ■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의료인의 경험: 전문의와 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 근관절건강학회지 ◆ 타 의료 학회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관련 연차 발표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관련 대응(한국전문간호사협회 성명서 발표, 대한간호협회, 복지부 의견 전달 등)

2) 2019년도 결산 보고

● 대차대조표 (2018.10.20 정기총회 자료)

대차대조표 (2018.10 월)			
차변		대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보통예금(신한은행)	10,750,062	당기이월금	25,664,737
보통예금(신한은행)	2,455,154		
보통예금(KEB 하나)	459,521		
정기예금(신한은행)	42,000,000	발전기금	20,000,000
자산 합계	55,664,737	자산 합계	55,664,737

● 수입부

계정과목		2019 년도 예산	2019 년 결산* (2018.10~19.12)	비고
전년도 이월금		30,784,294	30,858,344	
회비	평생회비	6,000,000	8,660,000	
	연회비	2,400,000	2,100,000	
	소계	8,400,000	10,760,000	
사업수입비	정책세미나 및 총회등록비	2,000,000	-	
	연수강좌 등록비	6,000,000	4,105,000	
	학술대회 등록비(18년도)	3,000,000	2,419,500	
	소계	11,000,000	6,524,500	
기타수입	이자	120,000	174,013	
	후원금	9,000,000	35,145,000	
	기타	10,000,000	945,870	세금환급+발전기금 적금 만기이자 포함
	소계	19,120,000	36,264,883	
수입총계 (회비+사업수입비+기타수입)		38,520,000	53,549,383	
총계(이월금+수입총계)		69,304,294	84,407,727	

* 2018년 10월 제 5회 정기총회 개최로 2019년도 회계기간은 18.10.1 일 시작임

● 지출부

계정과목		2019년 예산	2019년 결산 (2018.10~19.12)	비고
회의비	이사회회의비	1,200,000	1,860,200	
	자문위원 회의비	1,000,000	2,723,940	자문위원 및 특별위 회의비 비 포함
	소계	2,200,000	4,584,140	
교육위	회의비	500,000	399,300	
	연수강좌	6,000,000	5,960,360	
	소계	6,500,000	6,359,660	
기획위	회의비	500,000	430,900	
	임원워크샵	1,000,000	1,156,050	
	총회/심포지엄	5,000,000	14,288,890	무료 심포지엄 3회(18-11, 19-03, 19-10)
	회원가입 확대활동	2,000,000	2,622,000	협회 홍보동영상제작
	소계	8,500,000	18,497,840	
연구위	회의비	500,000	342,000	
	연구비	1,000,000	-	병원간호사회 용역연구 시행
	우수연구계획지원비	1,000,000	1,000,500	우수논문상금
	소계	2,500,000	1,342,500	
정책위	회의비	500,000	406,060	
	정책자료집제작	1,500,000	1,434,850	업무법제화 특위 자료 제작 (논문 포함)
	집담회비	1,000,000	-	
	소계	3,000,000	1,840,910	
학술위	회의비	500,000	469,800	
	학술대회	4,640,000	6,556,190	18년 10월 학술대회
	학술대회 상금	900,000	-	
	소계	6,040,000	7,025,990	
홍보위	회의비	500,000	727,000	
	뉴스레터 발행비	800,000	300,000	
	전문간호사시험응원	600,000	-	
	협회 홍보물 제작	600,000	-	
	소계	2,500,000	1,027,000	
사업비 소계		31,240,000	40,678,040	
운영비	홈페이지 관리비	1,000,000	583,500	
	사무잡비 및 수수료	500,000	737,400	
	우편통신비	600,000	790,970	
	임원활동비	1,600,000	2,615,180	*전문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방문 및 대외활동비
	경조사비	300,000	200,000	
	세금	500,000	2,446,400	
	기념품 제작	-	-	
	예비비	564,297	691,500	감사패, 선물 등
운영비 소계		5,064,294	8,064,950	
지출 합계(사업비+운영비)		36,304,294	48,742,990	

7. 2020년도 사업 계획(안) 및 2020년도 예산(안)

1) 2020년도 사업 계획(안)

위원회	2019년 사업계획
기획위원회	1. 전문간호사와 한전협에 홍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협 이미지 메이킹 활동(예: 한전협 캐치프레이즈) ◆ 시리즈 홍보 영상 제작 및 활용 ◆ 홍보책자(홍보위원회 제작)를 이용한 강의자료(PPT)활용 2. 회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전문간호과정대학원 연계 및 홍보 분야별 전문간호위원회 연계 및 홍보 3. 분야별 전문간호위원장 간담회 개최 (연 1-2회) 4. 홈페이지 한전협 활동 및 보도자료 업데이트 5.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임원 및 위원 밴드 활성화 6. 기획위원회 회의 4회 개최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 회의 3회 개최 2. 전문간호사 연수강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전문간호사를 위한 사례기반 임상추론 - 내분비계 ◆ 일시: 2020년 6월 20 토요일
연구위원회	1. 연구위원회 회의 4회 개최 2. 우수연구계획서상 2편(임상논문, 학위논문) 시상 3. 전문간호사 관련 연구 진행 4. 연구결과 발표: 2019년도 병원간호사회 용역 연구
정책위원회	1. 정책위원회 회의 5회 2. 정책자료집 제작 3. 전문가 워크샵 시행 4. 법인화 추진
학술위원회	1. 학술위원회 회의 5회 개최 2. 전문간호사 학술대회 준비 및 개최 (2020년 9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전문간호사 성과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 ◆ 장소: 일원역사 빌딩 9층 히포크라테스홀
홍보위원회	1.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뉴스레터 연 2회 발간 2. 공식행사(총회, 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등) 협찬/지원 및 기사 작성/배포 3. 2020년 8월 2차 전문간호사 자격 시험 응원 및 협회 홍보 4. 홍보용 카드 뉴스 5. 2020년 협회 홍보 브로셔 제작 배포 예정
정책연구소	1.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 2. 보건복지부 등 대외 단체 교류 및 협력

2) 2020년도 예산(안)

●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차변		대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보통예금(신한은행)	10,750,062	당기이월금	35,664,737
보통예금(신한은행)	2,455,154		
보통예금(KEB 하나)	459,521		
정기예금(신한은행)	42,000,000	적립금	20,000,000
자산 합계	55,664,737	자산 합계	55,664,737

● 수입부

계정과목		2019 년도 예산	2019 년 결산 (2018.10~19.12)	2020 년도 예산안
전년도 이월금		30,784,294	30,858,344	35,664,737
회비	평생회비	6,000,000	8,660,000	8,000,000
	연회비	2,400,000	2,100,000	2,000,000
	소계	8,400,000	10,760,000	10,000,000
사업수입비	정책세미나 및 총회등록비	2,000,000	-	-
	연수강좌 등록비	6,000,000	4,105,000	4,000,000
	학술대회 등록비	3,000,000	2,419,500	4,000,000
	소계	11,000,000	6,524,500	8,000,000
기타수입	이자	120,000	174,013	150,000
	후원금	9,000,000	35,145,000	20,000,000
	기타	10,000,000	945,870	0
	소계	19,120,000	36,264,883	20,150,000
수입총계(회비+사업수입비+기타수입)		38,520,000	53,549,383	38,150,000
총계 (이월금+수입 총계)		69,304,294	84,407,727	73,814,737

● 지출부

계정과목		2019 년도 예산	2019 년 결산 (2018.10~2019.12)	2020 년도 예산안	비고
회의비	이사회회의비	1,200,000	1,860,200	2,800,000	이사 증원
	자문위원 회의비	1,000,000	2,723,940	3,000,000	
	소계	2,200,000	4,584,140	5,800,000	
교육위	회의비	500,000	399,300	500,000	
	연수강좌	6,000,000	5,960,360	6,000,000	
	소계	6,500,000	6,359,660	6,500,000	
기획위	회의비	500,000	430,900	500,000	
	임원워크샵	1,000,000	1,156,050	-	*COVID19 로 취소
	총회/심포지엄	5,000,000	14,288,890	-	*COVID19 로 온라인 개최 예정
	회원가입 확대 활동	2,000,000	2,622,000	2,500,000	*홍보동영상 제작
	분야별 전문간호위원장 간담회			500,000	*신설
	소계	8,500,000	18,497,840	3,500,000	
연구위	회의비	500,000	342,000	500,000	
	연구비	1,000,000	-	2,000,000	
	우수연구계획지원비	1,000,000	1,000,500	1,000,000	
	소계	2,500,000	1,342,500	3,500,000	
정책위	회의비	500,000	406,060	500,000	
	전문가 워크샵	1,000,000		2,400,000	*집단회비 명칭변경
	정책자료집제작	1,500,000	1,434,850	1,500,000	
	소계	3,000,000	1,840,910	5,400,000	
학술위	회의비	500,000	469,800	500,000	
	학술대회	4,640,000	6,556,190	5,100,000	
	학술대회 상금	900,000	-	900,000	
	소계	6,040,000	7,025,990	6,500,000	
홍보위	회의비	500,000	727,000	500,000	
	뉴스레터 발행비	800,000	300,000	500,000	
	전문간호사시험응원	600,000	-	2,000,000	홍보용 볼펜
	협회 홍보물 제작	600,000	-	1,000,000	뿔지, 스티커 등
	소계	2,500,000	1,027,000	4,000,000	
정책연구 소	회의비			500,000	
	대외정책활동비			1,000,000	
	소계			1,500,000	
사업비 소계		31,240,000	40,678,040	36,700,000	
운영비	홈페이지 관리비	1,000,000	583,500	600,000	
	사무잡비 및 수수료	500,000	737,400	500,000	
	우편통신비	600,000	790,970	700,000	
	임원활동비	1,600,000	2,615,180	2,000,000	
	경조사비	300,000	200,000	300,000	
	세금	500,000	2,446,400	2,000,000	
	기념품 제작	-	-	500,000	
	예비비	564,297	691,500	10,494,737	
협회 특별 사업			20,020,000	*신설(전문가 의뢰비, 인건비, 행정비용 등)	
운영비 소계		5,064,294	8,064,950	37,114,737	
지출 합계(사업비+운영비+기타)		36,304,294	50,742,990	73,814,737	

8. 의안 심의

1) 정관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회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본회로 칭한다)라고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로 한다.	본 협회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본회로 칭한다)라고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로 한다.	문구 수정
제 2조(목적) 본회는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실무를 양양하고 간호학 지식과 술기를 발전·보급하며, 전문간호사의 권리 및 회원의 권익옹호와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전문간호의 발전과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학술,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학 지식과 술기’ 삭제하고 문구 수정
제 3조(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회에서 정한 곳에 둔다.	본 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사무실 주소 구체적인 주소입력
제 4조(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국민보건증진 및 대국민 간호봉사 나. 전문간호사의 역할, 권리와 법적 제도의 개선 다. 전문간호사의 실무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 라. 전문간호학 발전과 학술 진흥 마. 전문간호 지식 및 정보 교류 바. 전문간호사의 교육과 육성 사. 전문간호사의 권익옹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기타 복지향상 아.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 자. 기관지, 학술지, 학술서적 발간 차.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전문간호사의 역할, 권리와 법적 제도의 개선 나. 전문간호사의 실무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 다. 전문간호학 발전과 학술 진흥 라. 전문간호 지식 및 정보 교류 마. 전문간호사의 교육과 육성 바. 전문간호사의 권익옹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기타 복지향상 사.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 아. 기관지, 학술지, 학술서적 발간 자. 그 밖의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본 회 --> 본 협회 3. 변경 사항 없음	가. 국민보건증진 및 대국민 간호봉사 삭제 나 --> 가 다 --> 나 라 --> 다 마 --> 라 바 --> 마 사 --> 바 아 --> 사 자 --> 아 차 --> 자 변경 문구 수정
제 5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본회는 산하단체로서 지부와 분야별 분회를 둘 수 있다.	1. 본 협회는 보건복지부 유관단체로서 지부와 분야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본 협회는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문구 수정, 조직도 수정 2항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두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p>제2장 회원</p> <p>제 6조(회원의 자격)</p> <p>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 및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회원은 정관에 따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본회의 활동을 지지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고자 입회를 신청하며,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1. [정회원] 정회원은 국내 및 국외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와 전문간호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으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간호사로 한다. [개정, 2018.03.24]</p> <p>2. [준회원]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전문간호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로 한다.</p> <p>3. [특별회원] 본회는 이사회에서 자격과 권한을 정하는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p>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p>제 7조(권리와 의무)</p> <p>1.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회가 제공하는 자료 및 출판물,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 열람과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2.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3. 준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p> <p>4. 회원은 간호사의 윤리와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p> <p>5. 회원은 본회에 등록해야 하며, 회비 및 총회에서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본회에 납부해야 한다.</p> <p>6. 회원은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본회의 운영에 협력해야 한다.</p> <p>7.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p>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제 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p> <p>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p> <p>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p> <p>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p>	<p>본 회 --> 본 협회</p>	<p>문구 수정</p>
<p>제3장 임원</p> <p>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p> <p>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p> <p>1. 회 장 - 1명</p> <p>2. 부회장 - 2명</p> <p>3. 이 사 - 20명 이내(총무, 회계, 기획, 학술, 교육, 연구, 홍보, 정책)</p> <p>4. 감 사 - 2명</p>	<p>본 회→ 본 협회</p>	<p>문구 수정</p>
<p>제 10조(임원의 선임)</p> <p>1. [임원 후보]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2. [회장 후보] 회장 및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임원의 경험이 있던 자로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본회 사무처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p> <p>3. [회장의 선출] 본회 정관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한다.</p> <p>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p> <p>나. 가목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p> <p>4.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부회장 후보를 선출직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p> <p>5. [이사의 선출]</p> <p>가. 회장, 부회장은 이사가 된다.</p>	<p>본 회 --> 본 협회</p>	<p>문구 수정</p>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나. 이사의 선출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이사 후보를 선출직 이사 당선자로 한다.</p> <p>6. [감사의 선출]</p> <p>가.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 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p>		
<p>제 11조(임원의 임기)</p> <p>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p>	변경 없음	
<p>제 12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p> <p>1.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총무 이사 순으로 회장직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2.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p> <p>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30일 이내에 지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 11 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p>	<p>1-2 항 변경 사항 없음</p> <p>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30일 이내에 지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 11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p>	3항의 '차기부터' 문구 삭제
<p>제 13조(임원의 해임)</p> <p>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p> <p>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p> <p>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p> <p>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p> <p>4. 본회의 직함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p> <p>5. 본회의 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p>제 14조(임원의 결격사유)</p> <p>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미성년자</p>	변경 사항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5조(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총회, 이사회를 소집, 주관하고 결정된 사항을 위임 받아 성실하게 집행,관리할 의무가 있다.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제 16조(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는 활동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대리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변경 사항 없음	
제 17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변경 사항 없음	
제 18조(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5항 변경 사항 없음 6.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본 회 --> 본 협회	감사 실시 횟수와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 문구 수정
제4장 총회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p>	<p>본 회 --> 본 협회</p>	<p>문구 수정</p>
<p>제 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전 회계연도의 마지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구 시, 제13조 4호에 의한 감사의 소집 요구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정기총회는 개최 30일 전, 임시총회는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총회의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하여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p>변경 사항 없음</p>	
<p>제 21조(의결사항)</p> <p>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상정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정책 	<p>본 회 --> 본 협회</p>	<p>문구 수정</p>
<p>제 22조(위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회원이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총회 의장에게 위임장을 보내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위임 받은 권한은 출석과 의결권을 의미한다. 	<p>본 회 --> 본 협회</p>	<p>문구 수정</p>
<p>제 23조(성립 및 의결정족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총회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개정 및 기본 재산 처분, 해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 선출은 제 10조 3호에 따라 의결한다. 	<p>변경 사항 없음</p>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제 24조(의결제척사유)</p> <p>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변경 사항 없음	
<p>제 25조(의사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의 의사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회장, 부회장 및 출석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2. 총회의 의장은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의사록은 회원이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다. 	변경 사항 없음	
<p>제 26조(총회 결과 통보)</p> <p>총회 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변경 사항 없음	
<p>제5장 이사회</p> <p>제 27조(이사회 구성)</p> <p>이사회는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p>	변경 사항 없음	
<p>제 28조(이사회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변경 사항 없음	
<p>제 29조(이사회 의결사항)</p> <p>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9->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p>2항 신설 (제30조를 제29조 2항에 통합)</p>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3. 예산 계획, 결정 및 결산, 예산 외 임시지출 및 호목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에 권한에 속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결한다.	
제 30조(성립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삭제	29조 2항으로 통합
	제30조의 1(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1. 이사회는 다음 임무를 담당한다. 가.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나. 세입, 세출 예산 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라. 제 33조의 위원회 위원의 선 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30조의 1 (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신설
	바. 정관개정 및 규정 의제, 개정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임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이사회에 연속적으로 불참하거나 임무수행이 불성실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해임을 권유할 수 있다.	
제 31조(의결권의 행사) 1.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다른 이사여야 하며, 대리할 수 있는 이사 수는 1인에 한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사항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제 32조(의결제척사유)</p> <p>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p> <p>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p>	<p>본 회 --> 본 협회</p>	
<p>제6장 위원회</p> <p>제 33조(위원회)</p> <p>1.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둔다.</p> <p>2.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 33조(위원회)</p> <p>1. 본 협회는 상설기구로 상임위원회와 비상설기구로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p> <p>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위원회의 종류를 상설과 비상설로 명시하고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근거 마련</p>
<p>제 34조(상임위원회)</p> <p>1.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p> <p>가. 기획위원회</p> <p>나. 학술위원회</p> <p>다. 연구위원회</p> <p>라. 교육위원회</p> <p>마. 홍보위원회[신설, 16.06.10]</p> <p>바. 정책위원회[신설, 17.03.18]</p> <p>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이사가 된다.</p> <p>3. 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구성은 위원장이 한다.</p> <p>4. 각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맞추어 활동내용을 계획한다.</p> <p>5.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신설하고 폐지할 수 있다.</p> <p>6. 이사회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운영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p>	<p>본 회 --> 본 협회</p> <p>6항 삭제</p>	<p>위원회 운영에 대한 운영 규정은 제33조 2항으로 변경함.</p>
<p>제 35조(위원회의 의무)</p> <p>1. 기획위원회</p> <p>가. 본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p> <p>나. 정관 및 규정 관리</p> <p>다. 회원관리</p>	<p>제 35조(위원회의 임무)</p> <p>1항 - 6항 변동 사항 없음</p> <p>본 회 --> 본 협회</p>	<p>문구 수정</p>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라. 기타 본회 홍보 및 발전을 위한 사업</p> <p>2. 학술위원회</p> <p>가. 학술업무 총괄</p> <p>나. 학술대회 준비, 개최 및 지원</p> <p>다. 출판업무</p> <p>3. 교육위원회</p> <p>가. 교육업무 총괄</p> <p>나. 회원의 계속 교육,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p> <p>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및 간호학 발전에 관한 사항</p> <p>4. 연구위원회</p> <p>가. 연구업무 총괄</p> <p>나. 주제 연구 기획 및 수행</p> <p>다.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p> <p>라. 전문간호사 관련 연구분석</p> <p>5. 홍보위원회 [신설, 16.06.10]</p> <p>가. 홍보업무 총괄</p> <p>나. 본회 홍보물 제작과 취재</p> <p>다. 모니터 활동 및 대 언론활동</p> <p>라. 협회 후원관리</p> <p>6. 정책위원회 [신설, 17.03.18]</p> <p>가. 협회 정책업무 총괄</p> <p>나. 전문간호사 관련 법률, 제도 조사</p> <p>다. 보건의료 관련 제 법규에 관한 사항</p>		
<p>제7장 재정</p> <p>제 36조(재정)</p> <p>1.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p> <p>2. 입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p> <p>3.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하고 회원이 본회에 납입한다.</p>	<p>제 36조(재원)</p> <p>1. 본 협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p> <p>가. 입회비</p> <p>나. 연회비 및 평생회비</p> <p>다. 보조금 및 기부금</p> <p>라. 기타 수입금</p>	<p>문구 수정</p>
<p>제 37조(회계 연도)</p> <p>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p>	<p>본 회 --> 본 협회</p>	<p>문구 수정</p>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제 38조(재정의 운용)</p> <p>1.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운용은 회계이사가 총괄한다.</p> <p>2. 회계이사는 재정 운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p> <p>3. 회장은 회계이사를 지휘, 감독하며,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p> <p>4. 본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5.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6. 예산 외 임시 지출은 이사회 및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본 회 --> 본 협회</p>	
<p>제 39조(결산 보고)</p> <p>1.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 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보고한다.</p> <p>2.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3.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보고한다.</p>	<p>변동 사항 없음</p>	
<p>제 40조(임원의 보수)</p> <p>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p>	<p>제 40조(임원의 보수)</p> <p>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그 외 관련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규정 마련을 위한 근거</p>
<p>제 8장 보칙</p> <p>제 41조(해산 결의)</p> <p>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p>	<p>본 회 --> 본 협회</p>	
<p>제 42조(잔여재산의 처리)</p> <p>해산된 때의 본회의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 귀속시킨다.</p>	<p>본 회 --> 본 협회</p>	<p>문구 수정</p>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제 43조(정관의 변경)</p> <p>1. 정관 개정은 회장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p> <p>2.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p> <p>3. 회장은 개정된 정관 개정안을 총회 후 7일 이내에 총회결과에 포함하여 공지해야 한다.</p>	변동 사항 없음	
<p>제 44조(서면 결의)</p> <p>이사회와 총회 후 결의된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출석한 임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확인한다.</p>	이사회와 총회 후 결의된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출석한 임원의 서명으로 확인한다.	‘날인’에 대한 문구 삭제
<p>제 45조(규칙 제정)</p> <p>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p>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p>부 칙</p> <p>제 1 조(시행일)</p> <p>1. 본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p> <p>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p> <p>3. 본 정관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4. 본 정관은 201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5. 본 개정된 정관은 201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경과조치)</p> <p>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 3조(발기인의 기명날인)</p> <p>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p>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9. 부록

1) 2019년 임원 명단

직위	임원	소속	전문간호사 자격분야
회장	임초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
제1부회장	최수정	삼성서울병원	중환자
제2부회장	박하영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중환자
총무이사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임상
회계이사	정혜정	신촌세브란스병원	임상
서기이사	한지은	분당서울대병원	임상
기획이사	권은경	삼성서울병원	아동
정책이사	최성은	충남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정책이사	김소연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산업
정책이사	김은미	전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산업
교육이사	옥오남	삼성서울병원	종양
교육이사	김숙희	중앙대학교병원	노인/가정
연구이사	김정혜	울산대학교 임상전문간호대학원	종양
연구이사	김민영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종양
학술이사	김임령	삼성서울병원	종양
학술이사	권미수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중환자
홍보이사	양화정	서울아산병원	종양
감사	곽미경	삼성서울병원	종양
감사	심강희	삼성서울병원	노인
정책연구소장	신용애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2) 2019년 위원 명단

위원회	위원	소속	전문간호사 자격분야
기획위원회	오선영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
	윤호연	분당서울대병원	중환자
	이충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종양
	전종숙	분당서울대병원	중환자
	문혜원	서울아산병원	노인
	박정희	서울아산병원	중환자
	전미진	서울아산병원	종양
홍보위원회	장민영	서울아산병원	임상

위원회	위원	소속	전문간호사 자격분야
	최수현	서울아산병원	아동
	김현정	서울아산병원	중환자
	김영선	서울아산병원	종양
연구위원회	김희영	서울아산병원	아동
	전미경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임상
정책위원회	최화숙	한국호스피스협회	호스피스/정신/가정
학술위원회	유현정	분당서울대병원	노인
	이선영	연세세브란스병원	종양
	이세영	삼성서울병원	종양
	김나리	삼성서울병원	중환자
	이영신	서울아산병원	종양
	박희정	분당차병원	중환자
	이주리	서울아산병원	응급
교육위원회	박정운	울산대학교	종양
	이정림	서울아산병원	노인
	최현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
	조선미	삼성서울병원	종양
	장인영	분당서울대병원	응급

3) 2019년 분야별 전문간호위원회 위원장 명단

분야별 전문간호 위원회	위원장	소속	전문간호사 자격분야
가정	허현숙	서울대학교병원	가정
응급	김성숙	서울아산병원	응급
감염관리	최정화	건국대학교병원	감염관리
산업	김영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산업
마취	김명희	서울아산병원	마취
아동	최은경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아동
종양	김정혜	울산대 임상전문간호대학원	종양
노인	임경춘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노인
호스피스	박명희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임상	황지현	서울아산병원	임상
중환자	미정		
정신	미정		
보건	미정		

4)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회칙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정관

제정: 2015년 8월 22일

1차 개정: 2016년 6월 10일

2차 개정: 2017년 3월 18일

3차 개정: 2018년 3월 24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회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본회로 칭한다)라고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로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실무를 양양하고 간호학 지식과 술기를 발전·보급하며, 전문간호사의 권리 및 회원의 권익 옹호와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 소재지에 둔다.

제 4 조(사업)

1. 본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가. 국민보건증진 및 대국민 간호봉사
- 나. 전문간호사의 역할, 권리와 법적 제도의 개선
- 다. 전문간호사의 실무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
- 라. 전문간호학 발전과 학술 진흥
- 마. 전문간호 지식 및 정보 교류
- 바. 전문간호사의 교육과 육성
- 사. 전문간호사의 권익 옹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기타 복지향상
- 아. 국·내외 보건의료전문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
- 자. 기관지, 학술지, 학술서적 발간
- 차.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5 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본회는 산하단체로서 지부와 분야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 및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회원은 정관에 따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본회의 활동을 지지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고자 입회를 신청하며,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국내 및 국외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간호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으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간호사로 한다. [개정, 18.03.24]
2. [준회원]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전문간호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로 한다.
3. [특별회원] 본회는 이사회에서 자격과 권한을 정하는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 7 조(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회가 제공하는 자료 및 출판물,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열람과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준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4. 회원은 간호사의 윤리와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회원은 본회에 등록해야 하며, 회비 및 총회에서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본회에 납부해야 한다.
6. 회원은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본회의 운영에 협력해야 한다.
7.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제 8 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제명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 9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이사 - 20명 이내(총무, 회계, 기획, 학술, 교육, 연구, 홍보, 정책)
4. 감사 - 2명

제 10 조(임원의 선임)

1. [임원 후보]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회장 후보] 회장 및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임원의 경험이 있던 자로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본회 사무처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3. [회장의 선출] 본회 정관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한다.
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나. 가목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임원이 경험이 있던 자로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부회장 후보를 선출직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5. [이사의 선출]
가. 회장, 부회장은 이사가 된다.
나. 이사의 선출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지명한 이사 후보를 선출직 이사 당선자로 한다.
6. [감사의 선출]
가.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 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11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2 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1.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총무이사 순으로 회장직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30일 이내에 지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 11 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 13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직함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
5. 본회의 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4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5 조(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총회, 이사회를 소집, 주관하고 결정된 사항을 위임 받아 성실하게 집행,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 16 조(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는 활동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 또는 결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대리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 17 조(이사)

1.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8 조(감사)

1.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2.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5.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 19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전 회계연도의 마지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에 요구 시, 제 13 조 4 호에 의한 감사의 소집 요구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정기총회는 개최 30일 전, 임시총회는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총회의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하여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제 21 조(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서 상정한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정책

제 22 조(위임)

본회의 회원이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총회 의장에게 위임장을 보내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위임 받은 권한은 출석과 의결권을 의미한다.

제 23 조(성립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총회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개정 및 기본 재산 처분, 해산에 관한 사항은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 선출은 제 10조 3호에 따라 의결한다.

제 24 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5 조(의사록)

1. 총회의 의사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회장, 부회장 및 출석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2. 총회의 의장은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의사록은 회원이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다.

제 26 조(총회 결과 통보)

총회 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7 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제 9조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28 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 29 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계획, 결정 및 결산, 예산 외 임시지출 및 호목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에 권한에 속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30 조(성립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1 조(의결권의 행사)

1.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다른 이사여야 하며, 대리할 수 있는 이사 수는 1인에 한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위원회

제 33 조(위원회)

1.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둔다.
2.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4 조(상임위원회)

1.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 가. 기획위원회
 - 나. 학술위원회
 - 다. 연구위원회
 - 라. 교육위원회
 - 마. 홍보위원회 [신설, 16.06.10]
 - 바. 정책위원회 [신설, 17.03.18]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이사가 된다.
3. 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구성은 위원장이 한다.
4. 각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맞추어 활동 내용을 계획한다.
5.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신설하고 폐지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운영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제 35 조(위원회의 임무)

1. 기획위원회
 - 가. 본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
 - 나. 정관 및 규정 관리
 - 다. 회원 관리
 - 라.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학술위원회
 - 가. 학술업무 총괄
 - 나. 학술대회 준비, 개최 및 지원
 - 다. 출판업무
3. 교육위원회
 - 가. 교육업무 총괄
 - 나. 회원의 계속 교육,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및 간호학 발전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회

- 가. 연구업무 총괄
- 나. 주제연구 기획 및 수행
- 다.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 라. 전문간호사관련 연구 분석
- 5. 홍보위원회 [신설, 2016.06.10]
 - 가. 홍보업무 총괄
 - 나. 본회 홍보물 제작과 취재
 - 다. 모니터 활동 및 대 언론활동
 - 라. 협회 후원관리
- 6. 정책위원회 [신설, 2017.03.18]
 - 가. 협회 정책업무 총괄
 - 나. 전문간호사 관련 법률, 제도 조사
 - 다. 보건의료 관련 제 법규에 관한 사항

제 7 장 재정

제 36 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3.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하고 회원이 본회에 납입한다.

제 37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38조(재정의 운용)

1.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운용은 회계이사가 총괄한다.
2. 회계이사는 재정 운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3. 회장은 회계이사를 지휘, 감독하며,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4. 본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6. 예산 외 임시 지출은 이사회 및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재정운용에서 발생한 이익은 임원이나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9 조(결산 보고)

1.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보고한다.
2.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보고한다.

제 40 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장 보칙

제 41 조(해산 결의)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 42 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된 때의 본회의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 귀속시킨다.

제 43 조(정관의 변경)

1. 정관 개정은 회장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2.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3. 회장은 개정된 정관 개정안을 총회 후 7일 이내에 총회결과에 포함하여 공지해야 한다.

제 44 조(서면 결의)

이사회와 총회 후 결의된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출석한 임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확인한다.

제 45 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1.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개정된 정관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된 정관은 201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된 정관은 201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일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2020년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제 6차 정기 총회

발행인	임초선
발행처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구 연구원 울산대학교 임상전문간호대학원
전화	02-3010-6375
팩스	02-3010-5332
이메일	kaapn@kaapn.or.kr
홈페이지	www.kaapn.or.kr
편집디자인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발행일	2020년 04월 15일
